

2023 첨단실증지원사업 모집공고

(기술·사업화) 실증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「첨단실증지원사업」의 2023년도 신규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8월 31일

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

《 공고문 요약 》

- (사업명) 2023년도 첨단실증지원사업
- (사업목적)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KBIOHealth)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지원(서비스)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과극대화 및 환류체계 구축과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
- (사업주관) 보건복지부
- (전담기관)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
- (지원대상) 보건의료 혁신기술 및 아이템 보유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- (지원요건) ① 보건의료분야(바이오신약, 의료기기) 7년 이내 창업기업
② 총 1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 보유 기업
- (지원규모) 5억원/년 이내 * 최대 15억원(3년)
- (지원기간) 총 3년 이내 (2+1년, '23. ~ '26.)
- (지원목표) ① 개발 상위단계 진입 및 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실적 도출로, 민간 투자유치
② KBIOHealth(재단)-기업 간 파트너십 계약(성과공유)을 통해, 기업의 투자비용과 위험 요소를 분담하여 동반 성장 성공모델 창출
- (지원내용) 기술사업화를 위해 요구되는 분야별 공백영역(기술실증 및 사업화실증) 지원을 위한 KBIOHealth 인프라 활용 기술서비스 제공
- (지원조건) 재단 지원(투자) 규모(현물, 기술서비스 지원)에 대한 분담금 납부* 필수
* 기술서비스 총 지원(투자) 규모의 10%, 주식기준보상(지분, 주가차액보상권, 가상주식 등)
- (추진체계) (신청)주관기관(창업기업) + 협력기관*(멘토링 기관)
* 주관기관의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, KBIOHealth 4개 지원센터
- (모집기간) 2023. 8. 31. ~ 10. 10. (41일간)
- (신청방법)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조

1. 사업목적

- KBIOHealth의 우수한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고, 재단 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첨단의료 분야 초기기업의 성공모델 창출
- 기술성·시장성 측면에서의 전주기적인 검증(기술+사업화실증)을 위한 공백영역 기술서비스 제공으로, 기술완성도 강화 및 사업성공을 제고 등 기술 매력도 향상으로 민간투자 유인효과 확대
- 재단-기업 간 성과 공유(주식 기준) 및 현물매칭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비용과 위험요소를 분담하며, 추후 투자 회수(IPO, M&A 등)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

2. 세부내용

- (지원분야) 바이오신약 및 BT기반 의료기기 사업개발
- (지원대상) ① 보건의료분야 혁신기술 보유 7년 이내 창업기업*(Start-up), ② 적격투자기관**으로부터 총 1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

*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및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**창업 후 7년 미만인** 기업으로 하며, 창업(업력) 산정기준은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판단

*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열거된 투자기관

신청자격(전부 해당 必)	모집규모	비고
① 창업 7년 이내 기업 ② 총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**	기업 요청에 따라 변동* (최대 500백만원/1년, 최대 2개社)	- 분담금 납부*** 필수 - (우대) 투자사 추천, 고액 투자유치, 재단 입주

* (예시) 1개社(5억원), 2개社(3억원 + 2억원 / 4억원 + 1억원) 등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대상기업 선정 가능

** 투자증빙 : 투자 유치 자금 증빙서류(금액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 등)

*** 기술서비스 총 지원(투자) 규모의 10%, **주식기준보상**(지분, 주가차액보상권, 가상주식 등)

○ (지원규모) 최대 500백만원/1년 (3년, 총 1,500백만원 이내)

- 기술서비스(현물) 제공 (현금지원 無)

- 사업비는 지원받은 서비스 금액에 대한 10%의 민간부담금(현물)으로 구성

사업기간	총 사업규모		비고
	지원(투자) 규모(A)	기관부담사업비(현물)	
최대 3년 (2+1년)	최대 15억원/3년 (연 5억원/1년)	지원(투자) 규모(A)의 10% 이상	분담금* 납부 필수

* 기술서비스 총 지원(투자) 규모의 10%, **주식기준보상**(지분, 주가차액보상권, 가상주식 등)

- 재단 분야별 서비스(기술서비스 및 위탁연구개발, 입주 지원 등)를 활용, 전주기적인 검증(기술+사업화실증)을 통해 첨단의료 분야 초기기업의 성공모델 창출 및 사업성공을 제고

○ (지원기간) 총 3년 이내 (1단계: 2023 ~ 2025(2년) / 2단계: 2025 ~ 2026(1년))

-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(총 사업기간)은 내·외부 전문가 평가의견에 따라 기업 요청 서비스 내용 및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

- 협약 후 2년차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,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예산/지원기간 등 조정

※ 전담 기관의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

○ (지원조건) 재단의 기술서비스 지원(현물투자) 규모에 대한 **분담금 납부**

- 기술서비스 총 지원(투자) 규모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환산가치에 대한 **분담금 납부*(성과 공유, 주식 기준)**를 조건으로 지원(투자)이 진행됨

* 기술서비스 총 지원(투자) 규모의 10%, **주식기준보상**(지분, 주가차액보상권, 가상주식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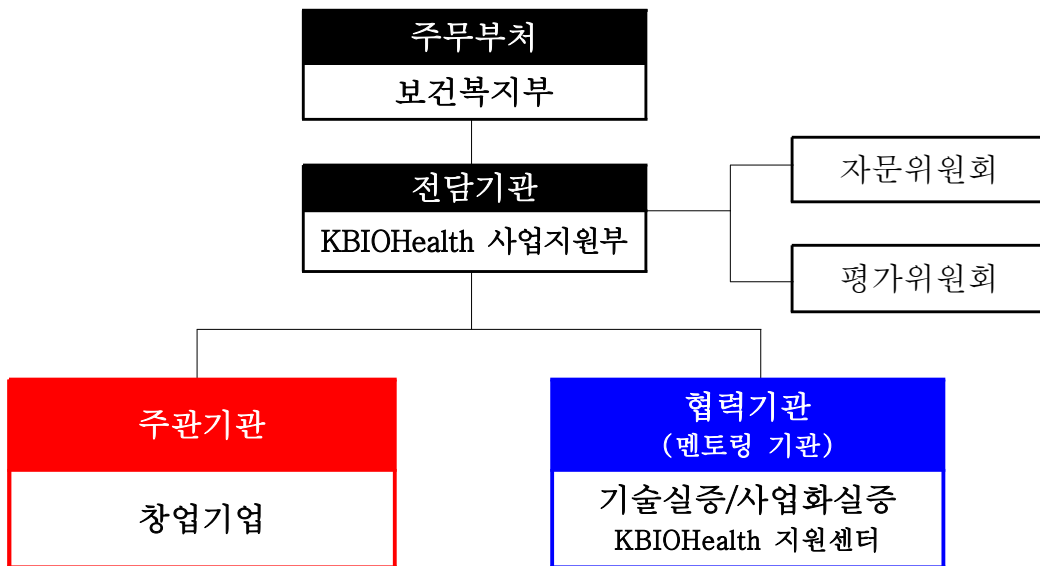
○ (지원목표) ① 기업의 기술 공백영역에 대한 전주기적 기술서비스 지원을 통해 상위 투자단계* 진입 기간을 단축하고,

* 투자단계 : Seed → (Pre-A) → 시리즈 A → 시리즈 B → 시리즈 C

(예시) 협약 당시 [시리즈 A] → 과제 종료 시 [시리즈B] 진입

② 재단-기업 간 **현물 매칭 및 성과공유(주식 기준)**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비용과 위험요소를 분담하며, 추후 투자 회수(IPO, M&A 등)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

- (지원내용) 기술실증 및 사업화 실증을 포함하여 KBIOHealth 인프라를 활용, 기업이 요구하는 공백영역에 대한 기술서비스 지원(최대 36개월 지원)
 - 기술실증(기술검증) : 재단 인프라를 활용한 제품화 또는 양산 가능성 검증 등
 - 사업화실증(시장성검증) : 재단 인프라를 활용한 후속R&D 등
 - 재단 임대연구시설 입주 지원 : 사업비 내 임대료 사용 허용
 - (과제구성) 기술서비스를 지원할 재단 지원센터와 협력(파트너링) 구성
 - 기업 요청 내용과 재단 서비스 금액을 고려, 협의하여 지원규모 확정
 - 센터 서비스(현물) 지원 필요성 및 서비스 단가 적정성 등 검토
- * 제공되는 투자(지원) 형태가 현금이 아닌 현물이므로, 재단의 분야별 서비스를 활용한 공백영역 지원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



< 수행기관별 역할 >

전담기관	주관기관	협력기관	
투자협약 체결 사업 운영 전반	사업개발과제 신청·추진·평가 및 목표달성 책임기관	주관기관의 사업개발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기관	
		기술멘토링	사업화멘토링
		재단 소속 4개 센터 (신약개발지원센터,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, 비임상지원센터, 바이오의약생산센터)	

3. 지원 우대사항

○ 신청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시, 아래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

가산점(부여)기준 * 최대 10점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동 사업과 관련된 투자유치 실적 확보 기업 : 5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접수일 기준 3년('20년~'23년) 이내 실적, 관련 증빙자료 제출필수 			
구분	10억원 미만	10억 ~ 30억원	30억원 이상
가점 기준	1점	3점	5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투자기관 추천기업 : 3점 (신청서 제출일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따라 명시된 벤처투자기관 ▪ 첨복단지 입주 기업 : 2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본 사업 협약 후 3개월 이내 재단 지원센터 렌탈랩 입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복단지 입주기업으로 인정 * 입주형태 : 본사 또는 연구소 (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인력 1명 이상 상시 근무) 			

○ 가산점은 선정평가 점수와 합산되어 산정되며, '평가점수 + 가산점' 합산 최종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가산점 부여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예정

4. 추진절차



5. 과제선발

- (모집단위) 신청단계에서 분야별(의약/의료기기, 융복합) 구분은 없으나, 선정평가 시 평가 단위가 구분될 수 있음
- (사전검토)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충족 여부, 재단 인프라 활용 서비스지원 가능성*, 지원 배재 해당 여부 등 검토
 - * 사전검토 결과 재단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가 불가능한 과제에 대하여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- 선정평가 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센터 추천직원을 서비스 책임자(SM, service manager)로 배당, 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
- 주관기관은 지원요건 증빙 및 (관련)자료제출, (전담기관 요청에 의한) 수정·보완 등에 대한 책임의무를 다해야 함
- (선정평가)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평가대상으로 확정된 신청과제는 서류 심사를 위한 서면평가와 대면심사를 위한 구두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예비과제로 결정되며, 선정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음
 - 평가기준 : 지원필요성(30점), 사업성(40점), 효과·파급성(30점)

구분	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	평가방법
선정 평가 (100)	필요성	정부지원 필요성 및 지원시급성	30	사업 계획서 서면검토 / 발표 및 질의응답
		사업 목표 및 내용 부합성		
		사업목표 명확성 및 추진전략 구체성		
		수행내용 및 예산배분의 적정성		
	사업성	사업적 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	40	
		사업 추진 역량 및 투입자원 충분성		
		사전준비활동의 적절성		
		후속 추진 계획의 구체성		
	파급성	기술적, 경제적 도출효과	30	
		사회·공공문제 해결 가능성 및 효과		
성과활용·연계·확산 가능성 및 효과				

- 평가원칙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량/절대평가
- 평가방법 :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발표, 협력(멘토링) 기관 서비스 책임자 배석
- 평가절차 : 서면평가(선정평가대상이 선정과제수 2배수 이상일 경우)
 - 구두평가(예비 지원과제 우선순위 결정)
- 기 타 : 서면평가 점수는 구두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가산점은 서면/구두평가에 각각 개별 반영(합산)됨

- (지원결정) 구두평가 최종점수 70점 이상, 최고점수 획득 과제 순으로 예비 지원과제 우선순위 결정
 - 예비 지원과제 선정 후 중복성검토(외부공시), (평가의견을 반영한)사업 계획 수정 및 (지원예산을 감안한)과제 사업비 조정 후 최종 확정됨
- (협약체결) 지원 결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「전담기관 ↔ 주관·협력기관」 간의 지원협약 체결 후 관련 사업비 지급
 - 협약 체결 전 성과공유계획 및 공유방안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요청 자료 제출/확인 필수
- (과제관리)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지원 과제의 진도점검과 과제 관리에 협조해야 함(성과/진도관리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, 현장실태조사 등)

6. 규정준수

- 주관·협력(멘토링) 기관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지침·기준 및 지원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
 - 사업추진 및 운영 : 첨단실증지원사업 추진관리지침 (별첨)
 - 사업비 편성 및 집행 : e-나라도움 사업비 계상기준
 - 보조금 사용 등 기타 :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

7. 지원배제

-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등 사업광고 상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정부·지자체R&D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해 동일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
- 주관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신청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국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거나, 각종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법률적·행정적인 제재조치 중인 경우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(※ 자본총계가 '0'이하인 경우)
 - 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
 -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 단,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득한 자료에 한함.

8. 신청방법

- 공고기간 : 2023. 8. 31.(목) ~ 10. 10.(화)
- 신청기간 : 2020. 8. 31.(목) ~ 10. 10.(화) 14:00까지
- 신청방법 : 지원분야별 첨부재단 웹페이지 관련 서식 작성, 이메일 제출
-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www.kbiohealth.kr) → 고객센터 → 과제공고 → 해당공고문 선택, 관련 서식 작성 후 이메일(lys3180@kbiohealth.kr) 제출
- 제출서류
 - ① 사업신청 공문 1부. (자율양식, 대표직인 날인 必)
 - ② 사업계획서 1부. (양식1)
 -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. (양식2)
 - ④ 민간부담금 출연 약정서 1부. (양식3)
 -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. (양식4)
 - ⑥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.
 - ⑦ 사업자등록증 각 1부.
 - ⑧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표 1부.
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'과제참여' → '유사과제' 자체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를 심의·판단하며, 전담기관은 신청기관에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 - ⑨ 기타 실적증빙자료 및 가산점 증빙자료 각 1부. 끝.

9. 유의사항

- 접수된 신청 관련자료는 수정할 수 없으며,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류 미비, 자료 누락/오류 등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공고기간 중 또는 공고 종료 후, 신청내용 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추가자료 또는 자료확인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음

10. 사업문의

-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업관리팀 043-200-9062, lys3180@kbiohealth.kr

11. 붙임

- (양식1) 사업계획서
- (양식2)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- (양식3) 민간부담금 출연 약정서
- (양식4)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- (참조1)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술지원서비스 목록 1부.
- (참조2) 첨단실증지원사업 추진관리 지침 1부.